

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12. 28 선고 2016가단15977 판결 [압류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서울특별시 강동구

변론 종결2016. 11. 23.

판결 선고2016. 12. 2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B에게 서울 강동구 C 임야 89m²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1. 10. 28. 접수 제4838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B은 2011. 2. 21. 서울 강동구 C 임야 89m²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06. 3.

18.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D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, E은 2011. 2. 24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.

나. 그 후 피고는 2011. 10. 28. D의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.

다. B의 채권자인 원고는 D, E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49856호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4. 1. 10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D 사이에 2011. 2. 21. 체결된 매매계약이 B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D에 대하여 위 2011. 2. 21.자 소유권이전등기를, E에 대하여 위 2011. 2. 24.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말소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.

라. E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. 12. 12. E의 항소를 기각하였고, 이에 대하여 E이 상고하였으나 2015. 4. 23. E의 상고도 기각되었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갑 제3호증의 1 내지 3, 갑 제4호증의 1 내지 5,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, 피고는 D의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사정변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,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그런데,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(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4다49532 판결 등 참조), B과 D 사이에 2011. 2. 21.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

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, 위 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거나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상아